



제422회국회(임사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시장지배적 플랫폼중개사업자의 불공정한 중개행위 금지 >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96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2207096)	1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시장지배적 플랫폼중개사업자의 불공정한 중개행위 금지 (안 제49조의20 신설 등)	3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2207096)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30.

다. 회 부 일 : 2024.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운송중개사업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여객운송 수요를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서비스로 일반택시뿐만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도 참여함.

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운송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운송가맹사업을 겸영하면서 해당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에 이른바 “콜 몰아주기”, “콜 차단”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택시호출서비스업 독과점 문제 및 경쟁 촉진을 위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

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시장지배적 플랫폼중개사업자의 불공정 중개행위 금지(안 제49조의 20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공정한 여객운송 중개 질서를 해할 수 있는 ①부당하게 운송사업자나 플랫폼가맹사업자를 차별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행위, ②중개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행위, ③ 그 밖에 공정한 중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및 제94조제1항제3호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20(불공정한 중개행위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공정한 여객운송 중개 질서를 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운송사업자나 플랫폼가맹사업자를 차별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6. (생략) <신설> 4. 5. (생략) ② ~ ⑤ (생략)	<u>2. 중개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행위</u> <u>3. 그 밖에 공정한 중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u> 제94조(과태료) ① ----- ----- -----. 1. ~ 3의6. (현행과 같음) <u>3의7. 제49조의20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u> 4.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서는 플랫폼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송서비스를 중개하는 사업을 통칭하여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사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 차량 확보 없이 운송서비스만 중개하는 여객자동차플랫

품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¹⁾.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세부 업종별 사업내용>

세부업종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 운송 (과거 타다·우버를 제도화한 유형)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사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유상 운송 (카카오 T블루 등)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여객과 운송사업자를 중개하는 중개서비스만 제공 (카카오 T 등)

그런데, 최근 시장점유율이 높은 운송플랫폼에서 가맹여부에 따라 가맹택시를 우대하여 배차하는 행위²⁾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202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정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플랫폼가맹사업을 겸영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음³⁾.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2) 자사 가맹콜 몰아주기, 타사 가맹택시 콜 차단 등

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OOOO 제재”(2023.2.1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OOOO가 ‘OOOO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OOOO’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였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중개사업자의 불공정한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여객운송 중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안 제40조의20 각 호에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운송사업자나 플랫폼가맹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는 행위’, ‘그 밖에 공정한 중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불공정 중개 행위에 대한 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미 규율되고 있는 행위로 보임.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규정된 플랫폼중개사업자의 불공정 중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처분과 조치를 하고 있음.⁴⁾

4)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지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1.15.) /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2024.10.2.) /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2023.2.14.) 등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정조치) (생략)

제8조(과징금) (생략)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시정조치) (생략)

제50조(과징금) (생략)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생략)

제15장 벌칙

제124조(벌칙) ~ 제130조(과태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 규제 신설을 통해

시장질서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와 함께 기존 규제와의 조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의 적정성 및 실효성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하게 여객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정부의 제재조치(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권한 도입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4